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0호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 제368호(1973.9.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6호(2022.3.17.)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3차(2023.9.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무교동45, 다동115, 을지로1가 31일대	109,965.8	-	109,965.8	건설부고시 제367호, 제368호('73.9.6.)

나. 정비지구 지정 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위치	시행면적(㎡)	구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무교다동구역 제29지구	을지로1가 16번지 일대	2,439.3	2,103.6	335.7	원료지구
변경	무교다동구역 제29지구	을지로1가 16번지 일대	2,208.4	2,103.6	104.8	일반정비지구 (재시행)

※ 변경사유 : 정비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완료 후 금회 정비기반시설(도로) 확보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지구명	항목		면적(㎡)			비율 (%)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제29지구	합 계		2,439.3	감) 230.9	2,208.4	100.0
		정비기반시설	도로	335.7	감) 230.9	104.8	4.7
		획 지	대지	2,103.6	-	2,103.6	95.3

※ 변경사유 : 정비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완료 후 금회 정비기반시설(도로) 확보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9,965.8 (2,439.3)	-	109,965.8 (2,208.4)	100.0	-
일반상업지역	109,965.8 (2,439.3)	-	109,965.8 (2,208.4)	100.0	-

※ ()는 제29지구의 면적임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	종로1가, 서린동, 태평로1가, 무교동, 다동, 을지로1가	191,200 (2,208.4)	건설부고시 제216호 (`73.6.5.)	-
기정	②	특정개발 진흥지구	-	중구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7 (2,208.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호 (`10.1.28.)	-

※ ()는 제29지구의 면적임

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 정비사업비(추산액)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분	항목	금액	산출근거
소요비용추산액	소요비용 계	276,832,846	-
	토지비(종전 토지 등의 금액)	134,018,000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종전자산(추산액)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무상양도 국공유지 제외]
	공사비	108,631,814	1식(철거/인입공사비 등 포함)
	설계/감리 등 각종 용역비	7,855,000	1식
	각종 분담금	4,797,000	1식
	부대경비	18,531,032	1식(금융비용 등)
	예비비	3,000,000	1식

※ 상기 정비사업비는 추산액으로 사업추진 일정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정비사업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총 사업비 (종후평가금액)	종후 대지	147,551,907
	신축건축물시설 평가액	129,280,939
대지조성비	5,355,000	②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134,018,000	③
총 대지평가차액	8,178,907	①-②-③

※ 본 금액은 분담금 추산액 산정을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비(추산액)로 검토한 것임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도시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하여 추후 확정

3)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

(단위: 천원)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전용 ㎡기준)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전용 33㎡기준)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	개별 분담금	비고
업무시설 (문화 등 포함)	21,599	714,029	1,061,028	346,999	수령
상가	22층	58,414	1,931,057	1,061,028	-870,029
	1층	116,829	3,862,114	1,061,028	-2,801,086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에는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행자 지급)하게 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징수)하는 것임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도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55	12	집산 도로	206	다동 39-1	다동 192-1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46호 (1980.2.12.)	-

2) 지하도로(중복결정) 결정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①	도로	지하 도로	을지로1가 16번지	27.2	-	증)75.0	75.0	-	-

※ 변경사유 : 기설치되어있는 지하도로를 금회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지정

3) 지하도로(입체적결정) 결정조서(신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입체적결정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연장(m)	폭원(m)	높이(m)	면적(㎡)		
신설	도로	지하 도로	을지로1가 16번지	35.2	3.4~5.2	24.4~28.6 (해수면기준)	184.2	-	사유지 내 지하충연결로

※ 변경사유 : 기설치된 출입구를 무교다동 제29지구 내에 설치하여 지상부의 보행환경 개선 도모

마.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부담) 계획(변경)

1) 정비기반시설등 부담계획(변경)

구분	사업 지구	시행지구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신설 정비기반 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획지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순부담 률(%)	비고
기정	29	2,439.3	2,103.6	335.7	-	-	335.7	13.7	-
변경	29	2,208.4	2,103.6	104.8	-	-	104.8(주1)	4.7 ^{주1)}	-

주1) 정비기반시설 지하도로(184.2㎡)는 기부채납 하되 순부담에서 면적 제외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시행지구면적 - 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 획지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 변경사유 : 정비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완료 후 금회 정비기반시설(도로) 확보

2)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확보) 계획(변경)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변경)

기정

구분	위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고
제29지구	을지로1가 46번지	도로	335.7	-

변경

구분	위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고
제29지구	다동 174번지	도로	104.8	-

(2)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해당 없음

(3)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국·공유지 면적 : 해당 없음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무교다동구역 제29지구	2,208.4	획지	2,103.6	을지로1가 16번지 일원	2	-	-	1	1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무교다동 제29지구	2,439.3	29지구	2,103.6	을지로1가 16번지	업무시설	44.5	589	- (13/4)	완료 지구
변경	무교다동 제29지구	2,208.4	29지구	2,103.6	을지로1가 16번지	업무시설	50 이하	600/774.0/890.3 이하	113.6 이하	재 시행
건축물 용적률계획				• 용적률 : ① + ② + ③ = 890.3%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774%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74.0%) - 변경						-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목적		인센티브 완화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29지구	친환경개발		전기자동차 설치시			정량부여	20%			
		생활SOC		일자리창출공간 조성시			정률부여	50%			
		공익시설	최상층(특정층) 개방공간 조성시			정률부여	18.2%				
			저층부 개방공간 조성시			정률부여	15.8%				
		보행가로활성화		가로지장을 이전/지중화			정률부여	5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량부여	20%			
	합 계							174.0%			
	③ 상한용적률 : 890.3%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16.3%)										
	구분		인센티브 산식						완화량		
	29지구	토지(도로)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2×α건축물)+(1.0×현금)} =800%×{1+(1.3×1×0.0498)} * α토지= 부담면적÷대지면적= 104.8㎡÷2,103.6㎡						51.8%	
		공개공지 초과조성		=허용용적률×(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면적÷대지면적) =800%×(169.75㎡÷2,103.6㎡) *공개공지 설치면적: 317.0㎡						64.5%	
	합 계		116.3%								
건축물 높이계획	• 최고높이(①+②) : 113.6m 이하 ① 기준높이 : 90m ② 개방형녹지에 따른 높이 : 23.6m										
	구분		산식						적용		
	29지구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확보		개방형녹지 의무기준(30%) 확보에 따른 높이 20m						20m	
		공개공지 초과조성		=기준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1/2)÷대지면적) =90m×(169.75(1/2)÷2,103.6㎡) *공개공지 설치면적: 317.0㎡						3.6m	
	합 계		113.6m								

개방형녹지 완화에 관한 계획		• 개방형녹지 : 3,000㎡미만의 토지 완화사항 - 면적에 관한 사항 : 개방형녹지 설치면적 696.0㎡(33.1%) > 적용기준 631.0㎡(30.0%) → 30% 적용 - 토심에 관한 사항	-																																			
		<table><tr><th>구 분</th><th>토심(m)</th><th>면적(㎡)</th><th>비율(%)</th><th>비고</th></tr><tr><td>개방형녹지</td><td>3.0</td><td>456.0</td><td>21.7</td><td>-</td></tr><tr><td>개방형녹지</td><td>1.0</td><td>122.0</td><td>5.8</td><td>그 외 토심완화</td></tr><tr><td>개방형녹지</td><td>0.5</td><td>53.0</td><td>2.5</td><td>공공성 확보 토심완화</td></tr><tr><td colspan="2">소계</td><td>631.0</td><td>30.0</td><td>높이 산정 적용</td></tr><tr><td>개방형녹지</td><td>0.2</td><td>65.0</td><td>3.1</td><td>높이 산정 제외</td></tr><tr><td colspan="2">합계</td><td>696.0</td><td>33.1</td><td>-</td></tr></table>	구 분	토심(m)	면적(㎡)	비율(%)	비고	개방형녹지	3.0	456.0	21.7	-	개방형녹지	1.0	122.0	5.8	그 외 토심완화	개방형녹지	0.5	53.0	2.5	공공성 확보 토심완화	소계		631.0	30.0	높이 산정 적용	개방형녹지	0.2	65.0	3.1	높이 산정 제외	합계		696.0	33.1	-	-
		구 분	토심(m)	면적(㎡)	비율(%)	비고																																
		개방형녹지	3.0	456.0	21.7	-																																
		개방형녹지	1.0	122.0	5.8	그 외 토심완화																																
개방형녹지	0.5	53.0	2.5	공공성 확보 토심완화																																		
소계		631.0	30.0	높이 산정 적용																																		
개방형녹지	0.2	65.0	3.1	높이 산정 제외																																		
합계		696.0	33.1	-																																		
- 폭원에 관한 사항 : 폭 5m 이상 → 주변보도와 연계하여 조성 시 폭 3m 완화 : 주변보도와 연계하여 폭원 완화 - 보도(개방형녹지 연계공간)를 포함한 사항	-																																					
<table><tr><th>구분</th><th>면적(㎡)</th><th>비율(%)</th><th>비고</th></tr><tr><td>개방형녹지</td><td>696.0</td><td>39.2</td><td>-</td></tr><tr><td>보도(개방형녹지연계공간)</td><td>1,080.0</td><td>60.8</td><td>개방형녹지 연계조성</td></tr><tr><td>소계</td><td>1,776.0</td><td>100.0</td><td>-</td></tr></table>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개방형녹지	696.0	39.2	-	보도(개방형녹지연계공간)	1,080.0	60.8	개방형녹지 연계조성	소계	1,776.0	100.0	-	-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개방형녹지	696.0	39.2	-																																			
보도(개방형녹지연계공간)	1,080.0	60.8	개방형녹지 연계조성																																			
소계	1,776.0	100.0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을지로, 남대문로9길, 무교로, 세종대로20길, 세종대로22길, 다동길, 을지로1길, 을지로3길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 지정용도: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상업시설(의류, 잡화, 서적, 전시시설, 소매점 등)]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공개공지	• 간선도로변(을지로, 무교로, 을지로1가길)에 설치하여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 및 휴게공간 조성	-																																			
	개방형녹지	• 지구 남측 : 지하출입구와 연계하여 녹지 지정 • 지구 북동측 : 인근 지구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녹지 지정 • 주변보도와 개방형녹지를 연계하여 토심 및 폭 완화 ※ 면적 산정시 개방형녹지 심의기준 2~2에 따라 실효성 없는 면적 제외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심의기준'에 따르며 상세계획은 '녹지생태도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조성할 것	-																																			
	저층부 개방공간	• 지상부 개방형녹지 공간과 직접 연결이 가능한 위치에 조성 • 시민이 쉴 수 있는 의자 및 테이블 등 편의시설 설치 • 동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상업시설 및 개방형화장실과 연계하여 운영	-																																			
	최상층 개방공간	• 최상층에 전망대나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설치, 전망대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에 녹지의 형상은 조정 가능

사.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경비기본계획’ 도시경관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 주요 도로변에서의 조망분석으로 주변 시가지 및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유도	-
환경보전	- 절토량과 성토량의 적절한 배분으로 지형변동 및 토량 이동을 최소화 - 투수성 포장면적 비율을 높여 우수부하 저감	-
재난방지	-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 등을 대비한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 설치 -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자. 세입자 주거대책(해당없음)

차.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기준년도 2022년, 목표년도 2024년

II.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위치	시행면적(㎡)	구 분		비 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무교다동구역 제29지구	을지로1가 16번지 일대	2,439.3	2,103.6	335.7	완료지구
변경	무교다동구역 제29지구	을지로1가 16번지 일대	2,208.4	2,103.6	104.8	일반정비지구 (재시행)

※ 변경사유 : 정비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완료 후 금회 정비기반시설(도로) 확보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9,965.8 (2,439.3)	-	109,965.8 (2,208.4)	100.0	-
일반상업지역	109,965.8 (2,439.3)	-	109,965.8 (2,208.4)	100.0	-

※ ()는 제29지구의 면적임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	종로1가, 서린동, 태평로1가, 무교동, 다동, 을지로1가	191,200 (2,208.4)	건설부고시 제216호 (`73.6.5.)	-
기정	②	특정개발 진흥지구	-	중구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7 (2,208.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호 (`10.1.28.)	-

※ ()는 제29지구의 면적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도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55	12	집산 도로	206	다동 39-1	다동 192-1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46호 (1980.2.12.)	-

2) 지하도로(중복결정) 결정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①	도로	지하 도로	을지로1가 16번지	27.2	-	증)75.0	75.0	-	-

※ 변경사유 : 기설치되어있는 지하도로를 급회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지정

3) 지하도로(입체적결정) 결정조서(신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입체적결정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연장(m)	폭원(m)	높이(m)	면적(㎡)		
신설	도로	지하 도로	을지로1가 16번지	35.2	3.4~5.2	24.4~28.6 (해수면기준)	184.2	-	사유지 내 지하층연결로

※ 변경사유 : 기설치된 출입구를 무교다동 제29지구 내에 설치하여 지상부의 보행환경 개선 도모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용도	비고
기정	허용용도	제29지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나. 건축물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고
기정	제29지구	• 44.5%	-
변경	제29지구	• 50% 이하	-

다.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고
기정	제29지구	• 589%	-
변경	제29지구	• 600%이하 / 774.0%이하 / 890.3%이하	-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제29지구)

구분	인센티브			비고
신설	친환경개발	전기차충전소 설치시	20%	-
	생활SOC	일자리창출공간 조성시	50%	
	공익시설	최상층(특정층) 개방공간 조성시	18.2%	
		저층부 개방공간 조성시	15.8%	
	보행가로활성화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5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20%	
합계			174.0%	-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제29지구)

구분	용적률 완화		비 고
	토지	공개공지 초과조성	
신설	51.8% *토지(도로) 기부채납 104.8㎡	64.5% *공개공지 계획 317.0㎡	-
합계	116.3%		-

라.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고
기정	제29지구	• 13/4층	-
변경	제29지구	• 113.6m 이하	-

1) 높이 사항(제29지구)

구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30%)	공개공지 초과 조성	비고
신설	20m *개방형녹지 631.0㎡ 적용	3.6m *공개공지 계획 317.0㎡	-
합계	23.6m		기준높이 90m

마.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고
기정	제29지구	• 건축한계선(3m) : 을지로, 무교로, 을지로1길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신설	공개공지	- 적용위치 : 을지로변, 을지로1길변 - 계획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적합하게 조성 및 설치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 및 휴게공간 조성	-
기정	전면공지	- 적용위치 : 을지로, 무교로, 을지로1길 - 계획내용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2)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개방형녹지	지구 남측 지구 북동측	696.0㎡	- 조성계획 : 지구 남측 및 북동측, 보도(개방형녹지 연계공간) 녹지 조성 -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에 적합하게 운영·관리)	· 3,000㎡미만의 토지 완화 · 631.0㎡(30.0%) 인센티브 적용

※ 면적 산정시 개방형녹지 심의기준 2-2에 따라 실효성 없는 면적(공공보행통로 등) 제외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심의기준'에 따르며 상세계획은 '녹지생태도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조성할 것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녹지의 형상은 조정 가능

III. 2023년 제13차(‘23.9.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분	심의결과	의견사항	비고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3.9.6.)	수정가결	• 조건사항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다음 사항 검토 필요 : 대상지가 을지로 시점부이자 보행량이 상당한 주요 지역에 입지한 바, 복층 입면계획을 보완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할 것. : 저층부 배치계획 관련 엘리베이터 및 로비의 계획 규모가 협소한 바, 향후 이용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할 것. • 권고사항 - 향후 개방형녹지 가이드라인 마련시 다음 사항 보완 필요 : 개방형녹지 토심완화는 '개방형녹지 외 지하보도 출입구 이설 등 공공성 확보시 적용' 및 '토심 완화의 최소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필요.	-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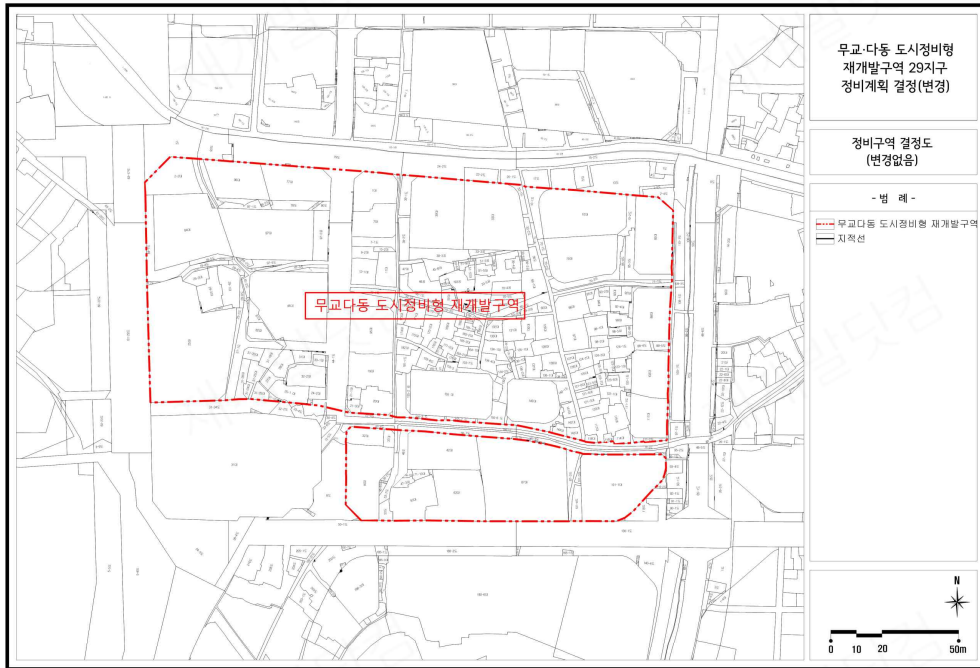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V.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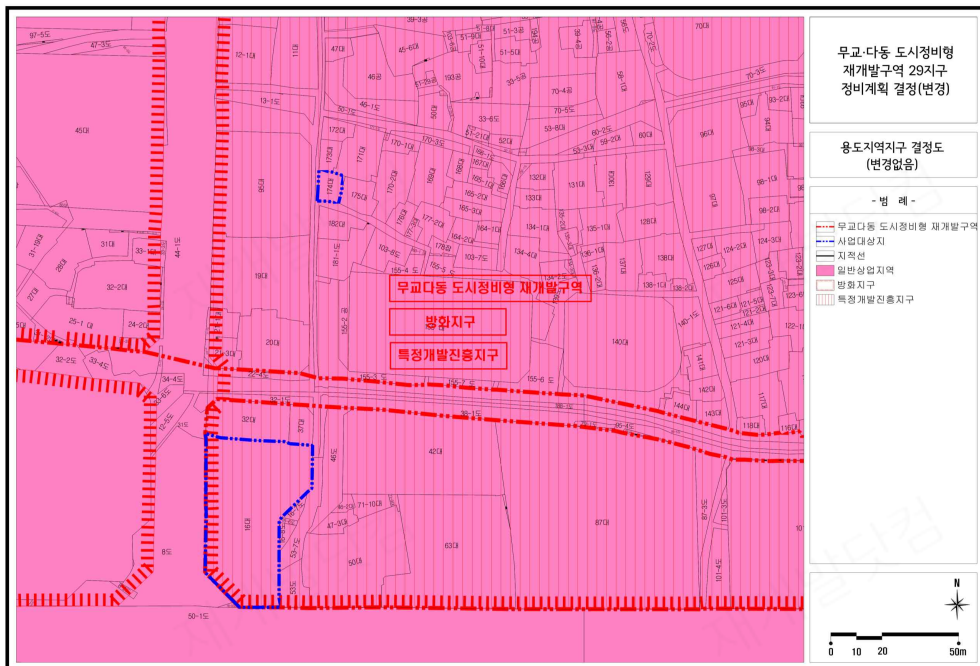
※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02-2133-4635) 및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74)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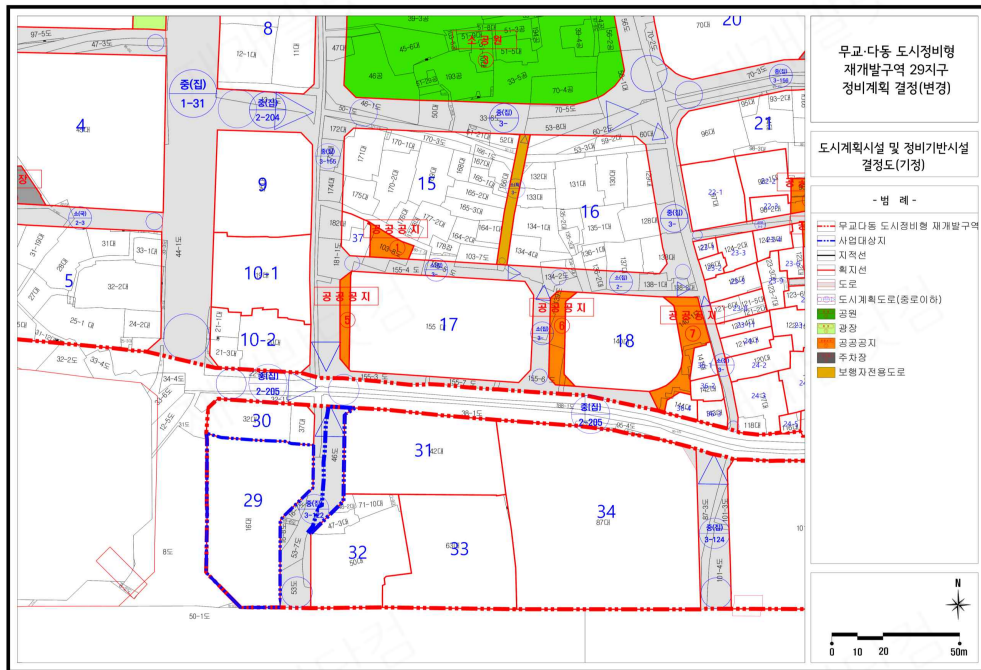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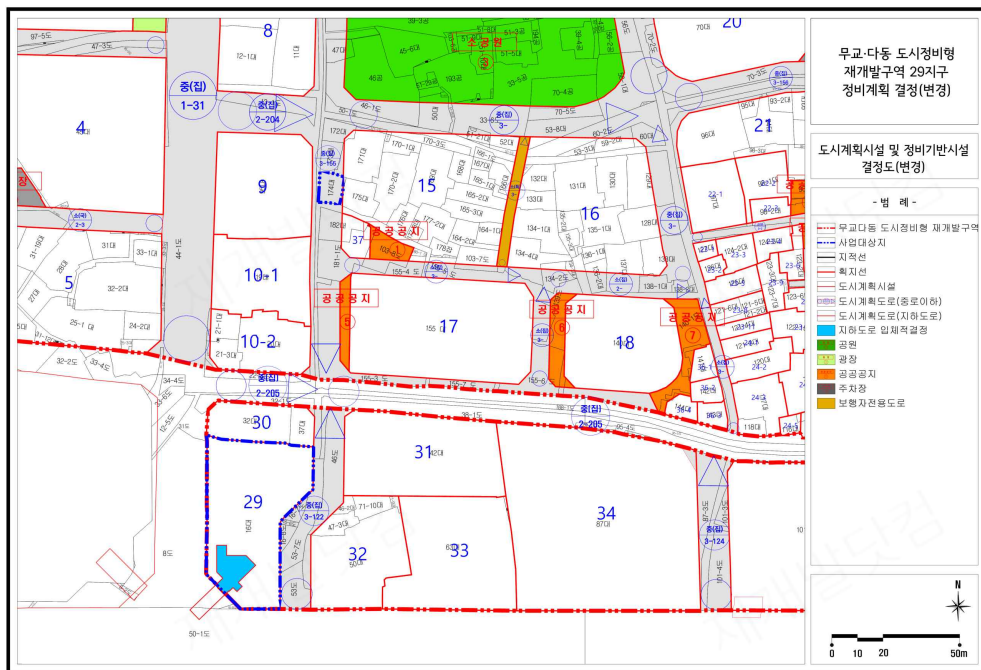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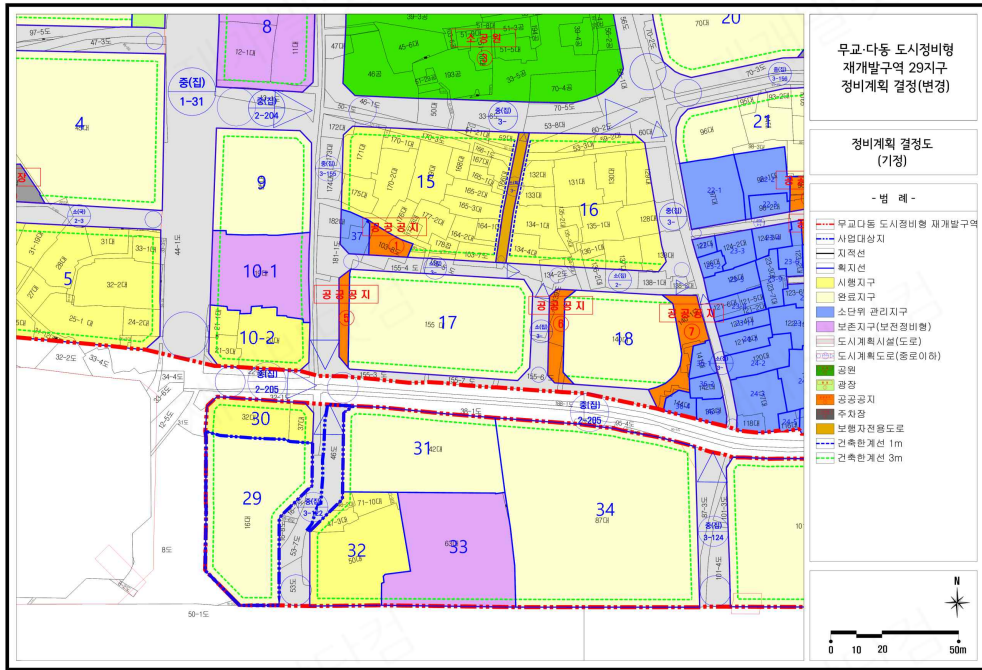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